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재)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I

보육교사 자격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관련 세부 경력 안내

보육업무 경력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Ⅱ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비고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규정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²⁾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등

●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영역	교과목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필수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 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Ⅲ 보육실습 기준

1. 보육실습 기준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 개정 2012. 8. 17, 시행 2013. 3. 1

구 분	내 용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실습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보육실습 세부기준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성적 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2014년부터는 보육실습 교과목이 3학점으로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대상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함
- 학점분할
 -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교과목을 보육실습 I, II로 나눌 수 있음
 - 보육실습 I, II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기간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직전후 방학 포함)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각 1회씩 실시
 - 실습기간은 두 기간을 합산하여 4주, 160시간 이상(월~금, 오전9시~오후7시 사이)

(예시)

Q : 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 I,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 II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과 2학기에 각각 2주 80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 I, II가 각각 2학점씩 합계 4학점이므로, 총 3학점 이상 이수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I, II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보육실습 실시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실습 인정시간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어린이집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교육원장) 직인을 받아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 부록 1 참고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 양식) 원본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대학(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 실습기관 발행 공문 첨부필수(부록 3 참고)

3.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방법 안내

- 2013년 3월부터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자격증 발급을 위한 보육실습 확인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변경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교육관리 폴더에 보육실습생 관리 메뉴 신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 내용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 제출서류 간소화(보육실습확인서의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1)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방법

- 대상 : 201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보육실습생
- 기간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
- 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 관리'에서 등록관리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방법>

-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2) 제출서류 간소화(보육실습확인서의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육실습확인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준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수기로 내용작성 후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재)한국보육진흥원에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준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후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재)한국보육진흥원에 발송

[참고자료]

IV 2005.1.30. ~ 2014.2.28.까지 기준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2005.1.30.~2014.2.28.까지 해당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별표1])을 갖춘 자

보육교사 1급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3년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증명서 ③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u>원본</u>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u>원본</u> ③ 보육실습확인서 <u>원본</u>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시 출력) |
|--|---|
- * 석사 졸업자 포함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 ②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④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출력)

● 경력인정범위

보육업무 경력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경력 공통 사항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공통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근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아동복지시설/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의 경력증명서 : 근무 시작 당시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첨부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 름	주민등록번호	양성 교육기관명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보육정원	
기관종류		최초인가일	
주소			
연락처			

3. 실습 지도교사

이 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요일 - 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습기관 사설인가증 사본 1부 2.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유치원은 양성교육기관에서 양식제공)

※ 기관종류 :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중 선택
자격종류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중 선택

부록2 보육실습일지

보육실습일지		결재	실습생	지도교사	원장
			㉠	㉠	㉠
반 명		일시	년 월 일 요일		
날 씨		결석 영유아			
주 제		소주제			
시간 및 일과	활동계획 및 실행		평가 및 유의점		
~ 09:00 등원 및 맞이하기					
~ 18:00 귀가 및 가정과의 연계					
실습생 평가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					

보육실습평가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보육실습기관명 :
 보육실습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평가영역(배점)	평가항목	배점	점수
근무태도와 자질 (20점)	근무사항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	5
	태도	성실성, 근면성, 친절, 적극성, 복장 및 용모, 예절	5
	자질	영유아 존중, 책임감, 인성, 열의	5
	관계형성	실습지도교사와의 관계 동료실습생과의 관계	5
보육활동 계획과 실행 (30점)	보육활동 계획	영역별, 반일(일일)보육활동 계획의 적합성과 충실한 준비	15
	보육활동 실행	영역별, 반일(일일)보육활동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행 정도	15
예비보육 교사로서 역할수행(30점)	영유아 행동 및 놀이 관찰, 보육환경 관찰		5
	보육일과 진행 보조와 일상생활지도		10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참여		15
보육실습일지 작성 (10점)	구체적이고 충실한 보육실습일지 작성과 일일자기평가 및 지도교사 평가 반영		10
총평 (10점)	실습기간동안 예비보육교사로서 향상 정도		10
총 점		100	

20 년 월 일

보육실습 지도교사 : (인)
 어린이집 원 장 : (인)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 어린이집/유치원

수 신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교) ○○과 학과장
/○○보육교사교육원장

경 유

제 목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류

본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아래의 보육실습 기간 동안 1인의 실습 지도교사가 3명 이내의 실습생을 지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보육실습 기간 : 0000.00.00 ~ 0000.00.00
2.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실습 지도교사	실습생	학교 및 학과
○○○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붙임 1.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 어린이집 원장/유치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협조자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붙임1] (실습기관 발행)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류

○○○ 어린이집/유치원

수 신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교) ○○과 학과장
/○○보육교사교육원장

경 유

제 목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류

본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아래의 보육실습 기간 동안 1인의 실습 지도교사가 3명 이내의 실습생을 지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보육실습 기간 : 0000.00.00 ~ 0000.00.00
2.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실습 지도교사	실습생	학교 및 학과
○○○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붙임 1.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 어린이집 원장/유치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